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6843
----------	-------

제안연월일 : 2026. 2.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연번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0375호)	김용민의원 대표발의	2025.5.2.	제425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025.05.1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 1소위원회 회부
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0430호)	장경태의원 대표발의	2025.5.8.	제425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025.05.1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 1소위원회 회부
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7661호)	박희승의원 등 18인	2025.1.21.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 (2025.9.2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 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 소위원회 회부
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3474호)	김용민의원 등 13인	2025.10.2.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전체회의 (2025.11.1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 1소위원회 회부

나. 제42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6.4.)는 위 1·2의 법률안 2건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2.11.)는 위 3·4의 법률안 2건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라.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26.2.11.)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한 대로 1~4의 법률안 4건을 통합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2022년 기준 대법원 본안사건 접수 건수는 연간 56,000건을 초과하였으며,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함. 이로 인해 심층적 심리와 숙의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상당수 사건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되는 구조 속에서 상고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구조는 대법원이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제도적 기능은 물론,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근본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대법관의 수를 증원함으로써 대법원의 심리 충실성과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며,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한편, 2023. 11. 1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 관련 자금 교부 및 출금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추가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상향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사물관할이 단독판사 관할에서 합의부 관할로 변경되었음.

위와 같은 행위 태양 추가 및 법정형 상향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의 대부분이 합의부 관할 사건이 됨에 따라 전국 법원의 형사 합의부 접수 사건이 급증하였으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특성, 전형적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재판 지연 해소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사건을 단독관할로 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법관의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고,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매년 4명씩 증원함(안 제4조, 부칙 제1조).

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사건을 단독판사 관할로 함(안 제32조제1항제3호자목).

법률 제 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14명”을 “26명”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사건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대법관의 수 12명 중 4명의 증원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4명의 증원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4명의 증원은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대법관) ①(생략)</p> <p>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u>14명</u>으로 한다.</p> <p>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p> <p>1.·2. (생략)</p> <p>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아. (생략)</p> <p><u><신설></u></p> <p>4. ~ 6. (생략)</p> <p>② (생략)</p>	<p>제4조(대법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26명</u>-----.</p> <p>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p> <p>가. ~ 아. (현행과 같음)</p> <p>자. 「<u>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u>」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사건</p> <p>4. ~ 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